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291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김형동·조지연·김위상

우재준 • 서일준 • 이종배

윤한홍 · 김상훈 · 김소희

정동만 • 박정하 • 임이자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산업전반의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필요한 시점임.

그런데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으며,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 등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유럽 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인증기 관의 지정요건 강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성적표지 인 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환경성적표지'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6조·제18조 등).
 - 현재의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고려하 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럽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 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
- 나. 환경발자국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함(안 제18조제2항).
 - 환경발자국 인증기관의 심사원 보유 기준을 2명 이상에서 상시 근 무하는 심사원을 5명 이상 보유하도록 강화
- 다.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제21조의2 및 제31조).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 업무의 범위 명시
 - 환경발자국 운영 업무규정의 작성 및 승인에 대한 근거 마련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근거 마련
- 라.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26조).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의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과 정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 명시

- 기업·기관·단체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포함
- 마. 환경발자국 인증기업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 환경발자국 인증제품 사후관리 시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법에 명시
- 바. 환경발자국 산정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

법률 제 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경발자국"이란 제품 등의 제조·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하는 탄소발자국,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하는 자원발자국 등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를 "심사원을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환경발자국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

- 른 환경발자국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발자국 작성 지침의 개발
- 2. 제26조제2호에 따른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전 과정에서 전과정목록 데이터의 개발
- 3. 제26조제6호에 따른 환경발자국 인증을 위한 지원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과정목록 데이터의 개발을 위하여 재료와 제품 및 그 원료물질 등을 생사하는 기업이나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19조제6호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성적표지"를 각각 "환경발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성적표지가"를 "환경발자국이"로, "환경성적표지에"를 "환경발자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 중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 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를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업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를 "업무에"로 한다.

- 1. 환경표지의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2. 환경발자국 인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3. 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제22조제1항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성적표지를"을 "환경발자국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을 "전 과정에서 환경부하를 계량화한 전과정목록 데이터 및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6. 제18조에 따른 환경발자국 산정을 위한 지원 제30조제2항 중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

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제18조의2에 따른 환경발자국의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환경발자국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인증을 신청한 자)는 이 법에 따른 환경발자국의 인증을 받은 것(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기관이거나 인증심사원이었던 자는 이 법에 따른 환경발자국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 제3조(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8조에 따라 시행 전에 지정한 인증기관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의2 중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환경발자국의 인증"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환경발자국"이란 제품 등의
	제조・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표시하는 탄소발자
	국,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을 표시하는 자원발자국 등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u> 것을 말한다.</u>
<u>6.·7.</u> (생 략)	<u>7.·8.</u>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	
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마런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에 따라 <u>환경성적표지</u>	4 <u>환경발자국</u>
의 인증을 받은 자	

5. • 6	6. (<i>)</i>	생 틸	丰)
--------	---------------	-----	----

- ②·③ (생 략)
-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
 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 ③ ④ (생 략)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 정한 경우에는 <u>환경성적표지</u>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5.·b. (연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u>환경발자국</u> 의 인증 등) ①
M10工(<u>セクセハカ</u> イ し o o) ①
취거비키그
<u>환경발자국</u>
,
②
1. <u>환경발자국</u>
2심사원을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환경발자국</u>

하다.

⑥·⑦ (생 략) <신 설> __

- ⑥·⑦ (현행과 같음)
- 제18조의2(환경발자국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에 따른 환경발자국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발자국 작성 지침의 개발
 - 2. 제26조제2호에 따른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전 과정에서 전과정목록 데이터의 개발
 - 3. 제26조제6호에 따른 환경발 자국 인증을 위한 지원
 - 4. 그 밖에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사업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과정목록 데이터의 개발을 위하여 재료와 제품 및 그 원료물질 등을 생사하는 기업이나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u>환</u> 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7. · 8. (생략)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 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 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폐지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 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u>사유</u>
가 없으면 그 요청을 !	따라야
<u>한다.</u>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 등)
1. ~ 5. (현행과 같음)	
6	<u>환</u>
<u> 경발자국</u>	
7. · 8. (현행과 같음)	マットシ
, , <u> </u>	증신청
등) ①	
<u> 경발자국</u>	
최 거 비나기 그	
<u>환경발자국</u>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을 받 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u>환경</u> <u>성적표지</u>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 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 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 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 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 다.
-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인증심사원) ① <u>환경성적</u> 저 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u>환경발자국</u>	-
환경발자	-
<u>국</u>	
③	-
	-
-환경발자국이	-
 환경발자국에	-
	_
4	
환경발자국	
	-
	-
세21조(인증심사원) ① 환경발자	-
<u>국</u>	-
	-
	-

② (생략)

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기 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 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 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인증업 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 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u>인증업무나</u>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
 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u>환경성</u>
 <u>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u>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
(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
<u>다)는 업무에</u>
·.
1. 환경표지의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환경발자국 인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② <u>업무에</u>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
<u>환</u> 경발
<u> 자국</u>

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 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 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생 략)

-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u>환경성적표지를</u> 표시하여 유 통시키는 경우
- 3.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 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발자국
시정명령을 하거
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u> </u>
1 /됬케기 기 ()
1. (현행과 같음)
2
<u>환경발자국을</u>
3. <u>환경발자국</u>

-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
 4.

 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u>환경</u> 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u>과정에서 환경성분석</u>기법의 개발

4		<u> 완경빝</u>	<u> </u>	
3				
<u>환경</u>	발자국			
				•
4 -				
				<u>환경</u>
<u>발</u> 자	<u>국</u>			
				
(5) (현행과	같음)		
제26조	(환경표	지인경	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현행과	간은)		
		_ , .		
2				
	<u>전</u>	과정	에서 횐	경부하
름	계량화	·하 저	과정목	록 데이
			, , ,	· · · · · · · · · · · · · · · · · · ·

3. ~ 5. (생 략) <u><신 설></u>

<u>6.</u> (생 략) 제30조(청문 등) ① (생 략)

- ② 인증기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을 받은 자에 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 ③ (생략)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 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1. ~ 4의4. (생략)
 - 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

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